
VI. 결론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 등의 경우는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 인적사고 보험금의 일시금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정기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을 지급함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 그 권리의 인수기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일시금지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기금 형식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 더욱이 자동차보험 표준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에서도 정기금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사고 보상금의 경우는 현재 제도에서도 보상금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다만, 약관의 “별도로 정한 바”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개별회사 차원에서의 규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별도로 정한 바”를 구체화하여 약관에 첨가하거나 보험업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이외의 준사회보험성격의 보험약관에도 정기금지급이 가능함과 그 지급방법 및 적용금리에 대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성년 유가족이 있는 경우나 고령의 노부모가 있는 경우 등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기금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정기금지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정기금 운영방식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사고유자녀의 수를 추정해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6,6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정기금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